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18
----------	------

발의연월일 : 2017. 7. 6.

발의자 : 신창현 · 김영주 · 민병두

강훈식 · 제윤경 · 김영호

박정 · 이훈 · 이용득

심재권 · 원혜영 · 송옥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국립공원구역 내에서 탐방객 실화 등으로 인한 화재가 2013년 8건, 2014년 9건, 2015년 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실화의 주된 원인인 흡연을 규제하는 법률상 근거는 없으며 현행법 시행령에서 공원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야영행위·주차행위·취사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으나 음주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음.

이에 자연공원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86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음주행위

10. 흡연행위

제8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호까지의”를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로 한다.

5.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8.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9. · 10. (생 략)</u></p> <p>② (생 략)</p> <p>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u>5. · 5의2. (생 략)</u></p> <p>② (생 략)</p> <p>③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u>제10호까지의</u>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p>	<p>제27조(금지행위) ① -----</p> <p>-----</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u>9. 음주행위</u></p> <p><u>10. 흡연행위</u></p> <p><u>11. · 12.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6조(과태료) ① -----</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한 자</u></p> <p><u>6. · 6의2. (현행 제5호 및 제5호의2와 같음)</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u></p>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